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관련 사항 안내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이에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으로 기본보육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외, 연장보육반을 담당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포함하여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평가 매뉴얼에 명시된 '담임교사'는 기본보육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지표에 따라 평가대상에 반을 맡고 있지 않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확인하시어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5쪽

□ 어린이집 운영기준(보육교직원 근무상황)

- 사례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 반을 맡지 않은 담임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183쪽

3-3-3-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1쪽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12쪽

□ 4-1-1-3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평가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교사 겸직 원장 제외